##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문영민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 2216

발의년월일 : 2017년 11월 2일

발 의 자 : 문영민, 유찬종, 김정태,

우창윤, 김광수(도봉), 송재형, 성중기, 이순자, 김용석(도봉), 김기대.

김창수, 김혜런 의원(12명)

#### 1. 제안이유

교육지원청과 지역교육청 등을 혼용하여 사용하던 용어를 교육지원 청으로 수정하며, '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'의 당연직 위원에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제외하고,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수정함.(안 제6조제1항, 제7조제2항)
- 나.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회 위원에서 제외함. (안 제9조제2항)
- 다.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.(안 제2조 제2호, 제3조제1항제5호, 제8조의2제1항제7호, 제9조제5항 등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 - 「학교급식법」제5조 (학교급식위원회 등)
    -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.
- 다. 기 타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"친환경 급식"을 "친환경급식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"친환경농어업법""을 ""「친환경농어업법」"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8호 중 "친환경 급식"을 "친환경급식"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5호 중 "유관기관"을 "관계 기관"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"지역교육지원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"지역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의 장"으로 한다.

제8조의2제1항제7호 중 "유관기관"을 "관계 기관"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1호 중 "행정1부시장 및 학교급식업무"를 "학교급식업무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해촉"을 "위촉 해제"로 한다.

제10조제4항 중 "가 정하는 바에"를 "에서"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"해태하거나"를 "게을리하거나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게 성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<u>.</u>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친환경학교급식"이란 제1조의	2
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	
지원 대상에게 <u>친환경 급식</u> 에	<u>친환경급식</u> -
소요되는 경비 전부를 국가나	
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	
말한다.	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6."친환경농・수・축산물수급체	6
계"란 농업인과의 사전계약 등의	
방식으로 재배한「친환경농어업	
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・	
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<u>"친환</u>	
<u>경농어업법"</u> 이라 한다)에 따른	<u>"「친환경농어업법」"</u>
친환경인증 농산물 및 수산물・	
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	
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.	
7. (생 략)	7. (현행과 같음)
8. "친환경유통센터"란 제1조의	8
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	<u>친환경급식</u>
농수산물식품공사가 운영하는	
친환경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	

현 행	개 정 안
시설을 말한다.	
제3조(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및	제3조(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및
시행) ① 시장은 제9조의 친환경	시행) ①
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	
또는 자문을 거쳐 매년 다음 각	
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급식	
등 지원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	
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서울특별시 교육청(이하"교육	5
청"이라 한다) 등 <u>유관기관</u> 과의	<u>관계 기관</u>
협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	
6. ~ 9. (생 략)	6. ~ 9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6조(지원 신청) ① 시장에게 급식	제6조(지원 신청) ①
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의	
장은 급식경비 지원 신청서를 <u>지</u>	교육
역교육지원청의 장을 거쳐 교육감	<u>지원청</u>
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어린이집	
의 원장은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	
하여야 한다.	<u>.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7조(지원대상자의 의무) ① (생	제7조(지원대상자의 의무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	②

현 행	개 정 안
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<u>지</u>	<u>ग</u> र्म
역교육청을 거쳐 교육감에게, 어	<u> 지원청의 장</u>
린이집의 원장은 구청장에게 각각	
제출하여야 한다.	<u>.</u>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8조의2(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실	제8조의2(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실
행)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친환경	행) ①
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	
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교육청, 자치구 학교급식지원센	7
터 등 <u>유관기관</u> 과의 협력 및 지	<u>관계 기관</u>
원사업	
8. (생 략)	8. (현행과 같음)
제9조(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	제9조(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
회의 구성) ① (생 략)	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	②
여 20명 이내로 하며, 위원은 다음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	
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	
다.	
1. 시 <u>행정1부시장 및</u> 학교급식업	1 <u>학교급식업무</u>
<u>무</u> 담당 국장	
2. ~ 10. (생 략)	2. ~ 10. (현행과 같음)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⑤ 시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	5
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	
없을 경우에는 <u>해촉</u> 할 수 있다.	<u>위촉 해제</u>
제10조(심의위원회의 운영) ① ~	제10조(심의위원회의 운영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	4
등에 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위원	
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 <u>가</u>	<u>oj</u>
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	
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	
다.	
다. 제11조(지도 감독 등) ① (생 략)	제11조(지도 감독 등) ① (현행과 같
	제11조(지도 감독 등) ① (현행과 같 음)
제11조(지도 감독 등) ① (생 략)	<u>♥</u> )
제11조(지도 감독 등) ① (생 략) ② 시장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	<u></u>
제11조(지도 감독 등) ① (생 략) ② 시장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이 제7조의 의무를	음) ② <u>게을</u>
제11조(지도 감독 등) ① (생 략) ② 시장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이 제7조의 의무를 <u>해태하거나</u> 지원목적을 위반하여	음) ② <u>게을</u>
제11조(지도 감독 등) ① (생 략) ② 시장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이 제7조의 의무를 <u>해태하거나</u>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	음) ② <u>게을</u>
제11조(지도 감독 등) ① (생 략)  ② 시장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이 제7조의 의무를 <u>해태하거나</u>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 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	음) ② <u>게을</u>
제11조(지도 감독 등) ① (생 략) ② 시장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이 제7조의 의무를 <u>해태하거나</u>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 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 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	음) ② <u>게을</u>